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우리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4년 11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12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ww.wooriam.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54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5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54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85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85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85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85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5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865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C27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O8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BP6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E74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E74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E7462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해당 펀드

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24.11.30)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펀드코드 : 75463]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가격 변동성, 환율 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SICAV FTIF Franklin Natural Resources Fund에 60% 이상 투자하는『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1450	0.9000	0.8800	2.0608	307	520	740	1,198	2,4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없음	1.7450	1.5000	1.2200	2.6608	269	535	796	1,306	2,6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2450	1.0000	0.7900	2.1604	219	445	676	1,160	2,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없음	1.1450	0.9000	-	2.0555	209	424	645	1,106	2,38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와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으로 예상투자기간이 해당 시점 이전이라면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예상투자기간이 해당 시점보다 길 경우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클래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2023.12.01~ 2024.11.30	2022.12.01~ 2024.11.30	2021.12.01~ 2024.11.30	2019.12.01~ 2024.11.3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10.30	8.08	1.21	9.37	7.44	-2.67
비교지수		19.36	8.74	17.70	14.40	3.35
수익률 변동성		14.59	17.62	21.32	28.88	28.13

(주1) 비교지수: :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TR) Index 94% + Call Index 6%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우석	1973	책임 (부문장)	29	2,284	-	-	13.50	9.20	16년 1개월
문혜민	1999	부책임 (사원)	14	480	19.14	-			1년 4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부문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rowspan="10">주요투자 위험</td><td>구 분</td><td>투자위험의 주요내용</td></tr>
<tr><td>원본 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td><td>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은 국외 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td></tr>
<tr><td>환율 변동 위험</td><td>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td></tr>
<tr><td>섹터 위험</td><td>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펀드는 특정 섹터나 업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섹터 혹은 업종의 특정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러 섹터 혹은 업종에 분산투자 할 경우에 섹터위험이 감소하지만, 주로 한 섹터 혹은 업종에 집중투자 할 경우 섹터위험이 극대화 됩니다.</td></tr>
<tr><td>유동성위험</td><td>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특성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td><td>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td></tr>
<tr><td>순자산가치 변동위험</td><td>해외투자의 경우 환매일까지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td></tr>
<tr><td>해지 위험</td><td>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2">※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 colspan="2">(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환매 방법</td><td>(17시 이전) 4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 후) 5 영업일 기준가 10 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기준가</td><td>산정방법</td><td colspan="3">-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http://www.wooriam.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able>
<tr><td>과세</td><td>
<table>
<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으로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 가격으로 자동 전환처리 됩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우리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1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am.kr</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 매출 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td></tr>
<tr><td>효 력 발 생 일</td><td>2024년 12월 20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http://www.wooria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th><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6">판매
수수료

판매
경로</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기타	보수체감(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용(C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1)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3)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특정금전신탁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wooria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wooria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54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5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54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85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85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85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85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5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8653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O8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C2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BP6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E74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E74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E746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75463)

기준	집합투자업자	법정분류	특수형태	투자기구	주된 투자대상자산	운용규제
내용	우리자산운용	증권	종류형, 자펀드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없음

(Class A: 75464/Class C1: 75465/Class C2: 28551/Class C3: 28552/Class C4: 28553/Class C5: 28554/Class C-e: 75466/Class C-F: 86533/Class C-W: BC272/Class S: AO870/Class CG: BP686/ Class C-P: E7460/ Class C-Pe: E7461/ Class S-P(퇴직): E746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07 년 10 월 30 일	최초설정
2008 년 5 월 16 일	약관변경:Class I 및 Class F 판매기준 변경
2008 년 10 월 6 일	약관변경: Class A 의 환매수수료 변경
2009 년 4 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10 년 2 월 26 일	세법 개정 반영
2010 년 3 월 16 일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2010 년 5 월 3 일	판매회사 보수 인하 (Class C 수익증권)
2011 년 1 월 10 일	CDSC 전환으로 인한 Class C 명칭 변경 (→Class C1) 및 Class C2, C3, C4, C5 신설 & 판매회사 보수 인하 (Class A, Class C-e 수익증권)
2011 년 5 월	모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변경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1 년 11 월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프랭클린템플턴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2 년 9 월 19 일	채권평가회사 추가
2013 년 5 월 3 일	CLASS C-F 수익증권 가입 자격 변경
2013 년 12 월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4 년 2 월 21 일	CLASS S 신설
2014 년 11 월	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2016 년 3 월 28 일	환매수수료 삭제, CLASS C-I 삭제 및 CLASS C-W 신설,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 년 7 월 2 일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 년 11 월 7 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SC 은행 펀드서비스부 → 우리펀드서비스
2017 년 4 월 29 일	CLASS CG 신설
2018 년 9 월 19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김강호→주민근)
2019 년 7 월 17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단독운용으로 변경: 백상훈, 주민근 → 백상훈)
2019 년 9 월 25 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2019 년 12 월 13 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19.9.16.)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20 년 11 월 13 일	결산시 산정한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2 등급→1 등급)
2021 년 10 월 6 일	분할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명칭변경
2021 년 11 월 10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매화→백상훈)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임정택→조남석),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매화→백상훈)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임정택→조남석)
2022 년 05 월 27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 년 12 월 08 일	이익분배 조항 변경(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 년 07 월 26 일	부책임운용역 삭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 년 11 월 09 일	클래스 신설(C-P, C-Pe, S-P(퇴직)),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1 등급→2 등급)
2023 년 12 월 08 일	책임운용역 변경 및 부책임운용역 추가
2024 년 11 월 29 일	수익률변동성 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 년 12 월 20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 층, 44 층 02-2118-05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작성기준일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수(개)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서우석	1973	부문장	29	2,284	-	-	13.50	9.20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6 년 1 개월			2000.01 ~ 2000.07 SK 증권 금융상품 영업 2000.08 ~ 2003.0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채권 운용 2003.02 ~ 2016.02 NH-Amundi 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총괄 2016.03 ~ 2019.10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자산운용총괄(CIO) 2019.10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 총괄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부문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 년 또는 2 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문혜민	1999	사원	14	480	19.14	-	13.50	9.20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 년 4 개월			2023.01 ~ 현 재 우리자산운용 해외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부문이 담당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 년 또는 2 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1)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서우석	1973	부문장	29	2,284	-	-	13.50	9.20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6 년 1 개월			2000.01 ~ 2000.07 SK 증권 금융상품 영업 2000.08 ~ 2003.0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채권 운용 2003.02 ~ 2016.02 NH-Amundi 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총괄 2016.03 ~ 2019.10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자산운용총괄(CIO) 2019.10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 총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문혜민	1999	사원	14	480	19.14	-	13.50	9.20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 년 4 개월			2023.01 ~ 현 재 우리자산운용 해외운용					

다.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백상훈	2021.11 ~ 2022.05
박매화	2022.05 ~ 2023.12
서우석	2023.12 ~ 현 재

라. 최근 3 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조남석	2021.11 ~ 2022.05
박태민	2022.05 ~ 2023.07
정혜인	2023.12 ~ 2024.12
문혜민	2024.12 ~ 현 재

<모투자신탁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1)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백상훈	2021.11 ~ 2022.05

박매화	2022.05 ~ 2023.12
서우석	2023.12 ~ 현 재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조남석	2021.11 ~ 2022.05
박태민	2022.05 ~ 2023.07
정혜인	2023.12 ~ 2024.12
문혜민	2024.12 ~ 현 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종류형, 모자형, 개방형, 추가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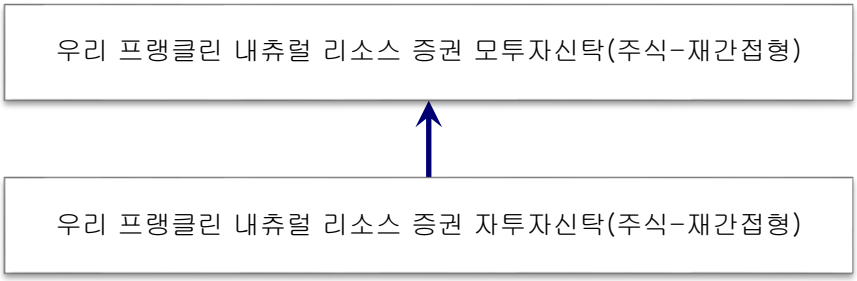
		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용(C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1)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3)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특정금전신탁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주 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집합투자신탁 종류별 설정여부는 작성기준일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FTIF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펀드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서 천연자원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인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unds 의 하위펀드 Franklin Natural Resources Fund 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천연자원 주식**이란:

		천연자원 섹터 [1]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2] 또는 이들 회사에 주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1) 천연자원(내츄럴 리소스) 섹터에는 석유, 가스, 석유 및 천연가스의 시추 및 생산, 금을 포함한 귀금속, 철과 철광석의 생산, 에너지 서비스와 에너지 기술, 비금속 생산, 임산물, 농산물, 종이 제품, 화학품, 건축 재료, 석탄, 대체 에너지 및 환경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 포함됩니다. 2) 천연자원(내츄럴 리소스) 섹터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는 천연자원을 소유, 생산, 정제, 가공, 운송 또는 판매하거나 그외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비교지수: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TR) Index 1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1 조제 1 항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6 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Franklin Natural Resources Fund 에 주로 투자하는『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Franklin Natural Resources Fund 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주로 (i) 천연자원 업종에서 주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및 (ii) 위 (i)항에 언급된 회사(중소기업을 포함)의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예탁증서에 주로 투자합니다. 본 펀드의 투자목적상, 천연자원 업종은 천연자원을 소유, 생산, 정제, 처리, 운송, 거래하는 회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포함합니다. 이 분야에 포함되는 업종으로는 일체형 오일,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 에너지 서비스와 기술, 대체에너지원과 환경서비스, 산림/농업/제지 제품과 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 대상

① 아래 제②호 내지 제④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② 통화관련파생상품거래의 선물증거금납입을 위한 잔존만기 1 년 이내의 채권은 투자신탁재산의 5% 이내로 합니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④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④호 및 ⑤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am.kr)에 게시된 모집합투자기구의 규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단, 내츄럴 리소스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일반주식	40% 이하	일반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40% 이하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합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어음	40% 이하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대여 [1]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7.	증권의 차입 [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 (2)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에 게시된 모집합투자기구의 규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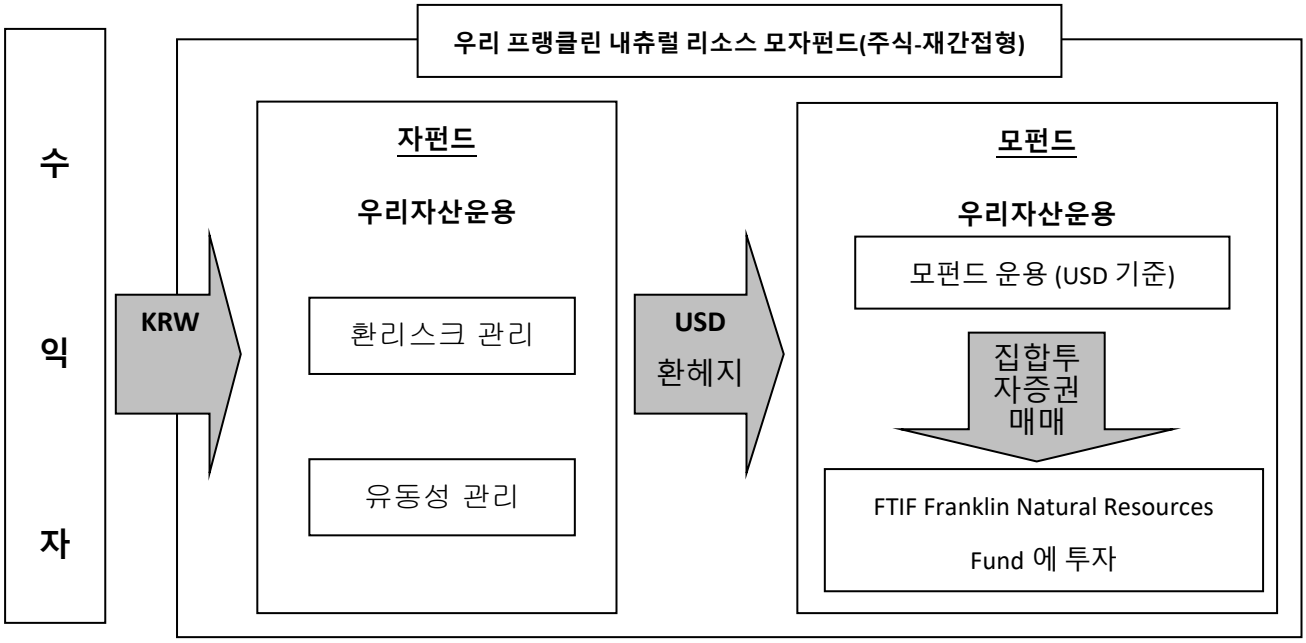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94 조제 2 항제 4 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 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ㅇ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ㅇ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 개월간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1호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ㅇ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및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의 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ㅇ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ㅇ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지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투자매매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 개월간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 (단,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 목적의 단기채권 투자 제외)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미달러화로 표시되는 FTIF Franklin Natural Resources Fund 에 주로 투자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관련통화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청산 및 해산, 성과부진 등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교체될 수 있으며, 피투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TR) Index 94% + Call Index 6%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TR) Index : Standard & Poor's가 제공하는 섹터 인덱스로 천연자원관련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다.

나. 위험관리

미국달러화로 표시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목표헤지비율: 100% 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환헤지]
① 환헤지 방법: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을 목표로 선물환 또는 통화선물을 통해 환헤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환헤지비율의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과 해지,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 초기 등 일정기간 설정액이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장단점: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해외통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것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투자대상 외화자산의 원화평가가치가 상승하지만, 환헤지로 인해 환율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은 상쇄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③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 외화자산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원화가격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원화가격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른 목표 외화자산보다 낮은 환헤지와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국내 외환시장의 시장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하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가치변동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④ 환헤지 비용(2024.10.29 기준)

목표 헤지비율	환헤지 비용(연간, 원)
100%	497,500

주)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은 국외 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	✓ 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노출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섹터 위험	✓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펀드는 특정 섹터나 업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섹터 혹은 업종의 특정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러 섹터 혹은 업종에 분산투자 할 경우에 섹터위험이 감소하지만, 주로 한 섹터 혹은 업종에 집중투자 할 경우 섹터위험이 극대화 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

	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일까지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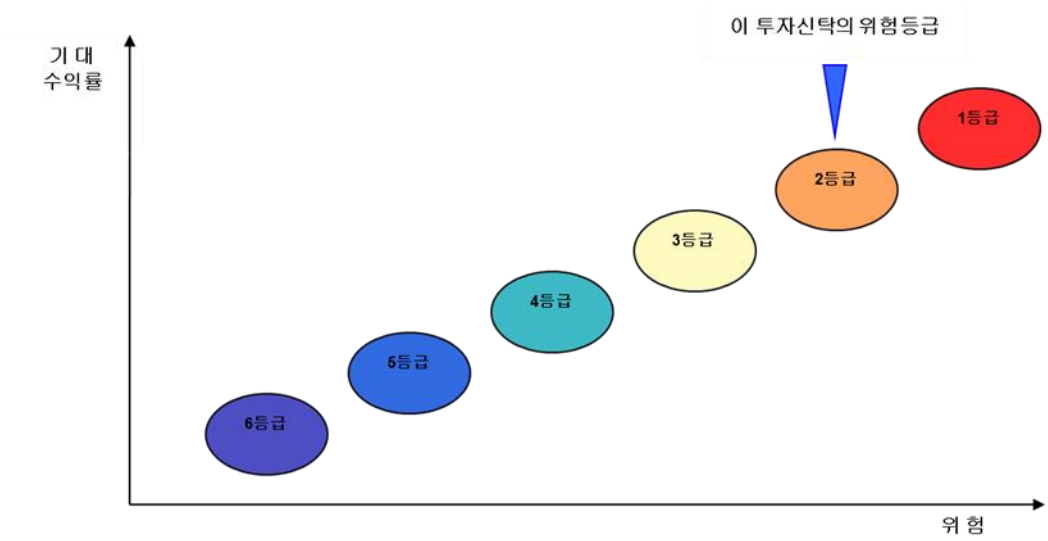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특성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특성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44.88%**로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분류한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채택한 위험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수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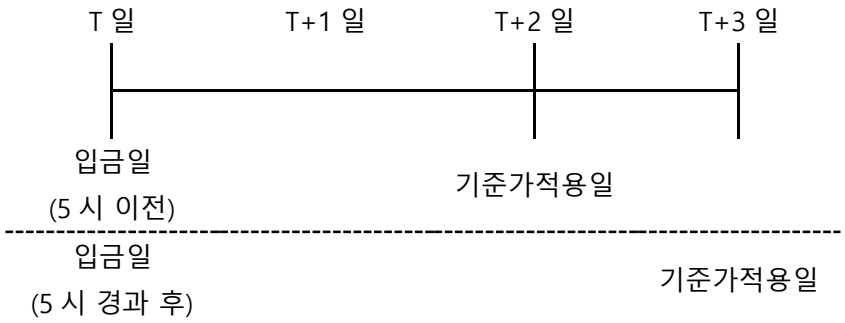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Class C1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Class C2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Class C3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5)	Class C4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3.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특정금전신탁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 저비용(CG)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권유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P(퇴직))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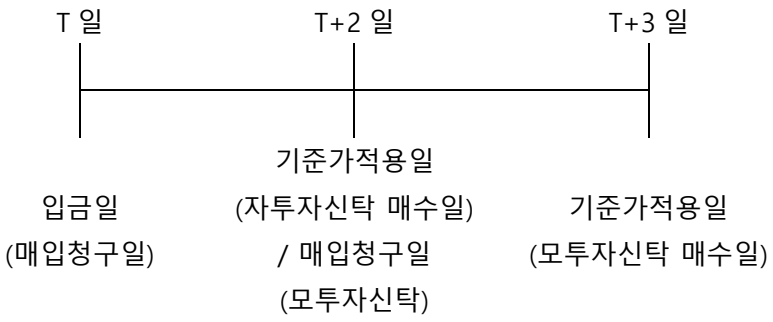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 원)을 적용합니다.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자투자신탁에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구 분		수수료(비용)	
		발생	미발생
중도환매	허용		O
	불가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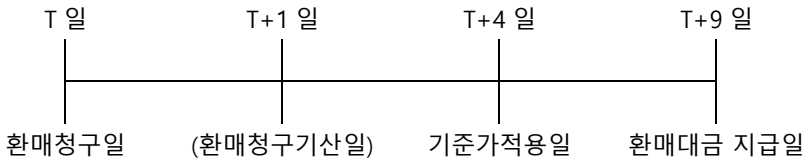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 전의 날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 영업일 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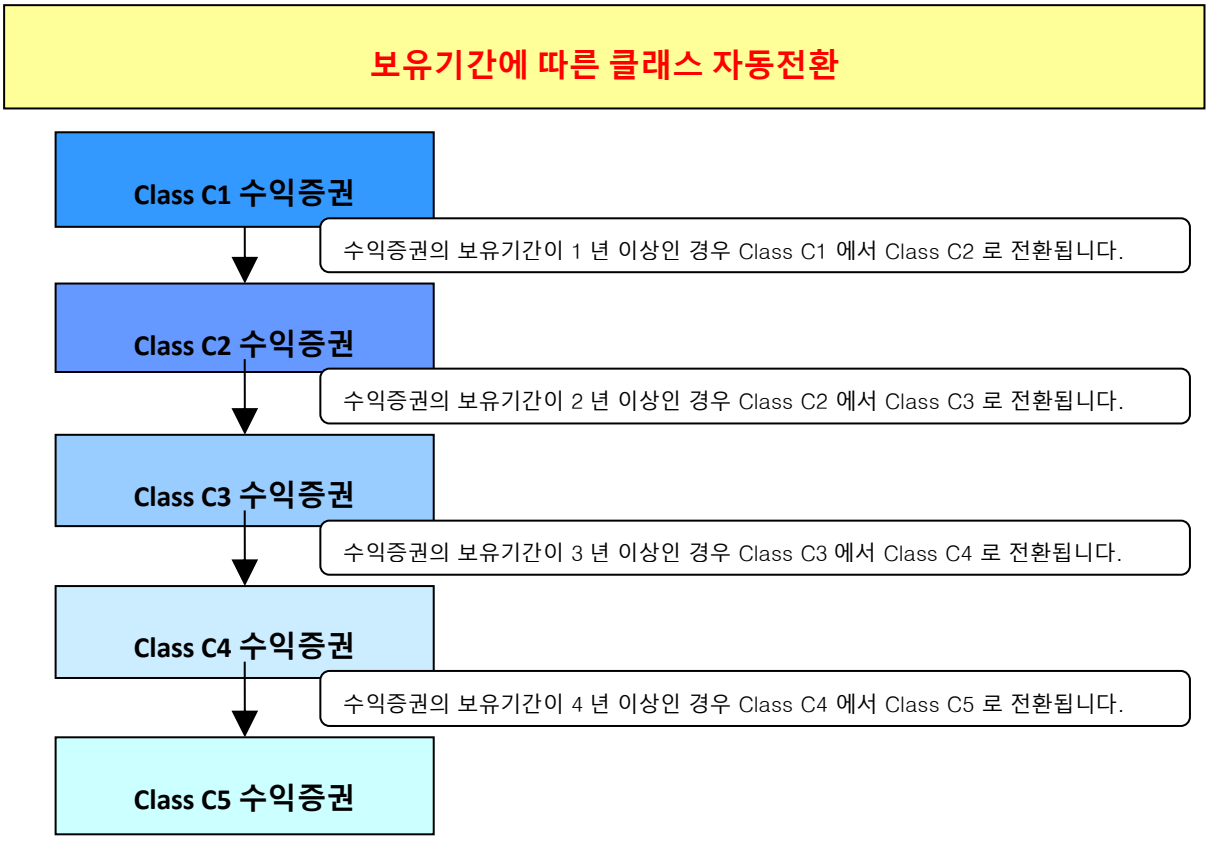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

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증권 간 전환

(1)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전환 이전에 추가 매수 및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한다)를 청구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매수 및 환매 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집합투자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게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게시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익증권 : 3 년 미만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간, %)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2000	0.9000	0.0300	0.0150	1.1450	0.0054	1.1504	0.8800	2.0608	0.0479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2000	1.5000	0.0300	0.0150	1.7450	0.0054	1.7504	1.2200	2.6608	0.0479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2000	1.4000	0.0300	0.0150	1.6450	0.0054	1.6504	1.2200	2.5608	0.0479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2000	1.3000	0.0300	0.0150	1.5450	0.0054	1.5504	1.2200	2.4608	0.0479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2000	1.2000	0.0300	0.0150	1.4450	0.0054	1.4504	1.2200	2.3608	0.0482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2000	1.1000	0.0300	0.0150	1.3450	0.0037	1.3487	1.2200	2.2592	0.0478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2000	1.0000	0.0300	0.0150	1.2450	0.0049	1.2499	0.7900	2.1604	0.0479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0.2000	0.0300	0.0300	0.0150	0.2750	0.0054	0.2804	-	1.1908	0.0479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2000	0.0000	0.0300	0.0150	0.2450	-	0.2450	-	1.1555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2000	0.2500	0.0300	0.0150	0.4950	-	0.4950	-	1.4055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2000	0.7500	0.0300	0.0150	0.9950	-	0.9950	-	1.9055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2000	0.9000	0.0300	0.0150	1.1450	-	1.1450	-	2.0555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2000	0.5400	0.0300	0.0150	0.7850	-	0.7850	-	1.6955	-
S-P (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0.2000	0.2250	0.0300	0.0150	0.4700	-	0.4700	-	1.3805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주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497,500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10.30 ~ 2024.10.29]

주4)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FTIF Franklin Natural Resources Fund I share의 총 보수·비용비율을 약 연 0.99%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여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비용[1)]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16	337	462	727	1,483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307	520	740	1,198	2,4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178	351	520	839	1,713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269	535	796	1,306	2,6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127	260	397	686	1,510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219	445	676	1,160	2,492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9	59	90	158	35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21	247	378	655	1,44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51	79	138	3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18	240	367	636	1,403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1	104	159	277	62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43	291	445	769	1,68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207	317	550	1,2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94	393	599	1,029	2,22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	238	364	630	1,3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209	424	645	1,106	2,38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4	251	436	9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72	351	535	921	2,00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P(퇴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98	151	263	5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41	286	437	755	1,657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와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으로 예상투자기간이 해당 시점 이전이라면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예상투자기간이 해당 시점보다 길 경우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3) Class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7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국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900 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 만원과 합산)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7기 (2023.10.30 ~ 2024.10.2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6기 (2022.10.30 ~ 2023.10.2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5기 (2021.10.30 ~ 2022.10.2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7기 (2024.10.29)	제16기 (2023.10.29)	제15기 (2022.10.29)
운용자산	939,200,817	1,068,336,929	1,400,062,394
증권	887,821,039	1,006,980,897	1,304,240,181
파생상품	-15,201,883	-5,429,637	6,270,423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6,581,661	66,785,669	89,551,79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4,742,913	2,317,389	932,734
자산총계	953,943,730	1,070,654,318	1,400,995,12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81,160	654,261	1,768,951
부채총계	681,160	654,261	1,768,951
원본	1,227,718,160	1,468,587,167	1,916,900,271
수익조정금	-52,020,595	-16,329,571	-27,101,567
이익잉여금	-222,434,995	-382,257,539	-490,572,527
자본총계	953,262,570	1,070,000,057	1,399,226,177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17기 (2023.10.30 ~ 2024.10.29)	제16기 (2022.10.30 ~ 2023.10.29)	제15기 (2021.10.30 ~ 2022.10.29)
운용수익	318,165,690	183,468,040	291,205,368
이자수익	1,077,973	924,503	649,22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17,087,717	182,543,537	290,556,147
기타수익	0	-168,447,757	-22,441,484
운용비용	-497,500	-656,500	-645,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497,500	-656,500	-645,000
기타비용	-16,130	-17,790	-38,590
당기순이익	317,652,060	14,345,993	268,080,294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3,067.89	0.00	0.00	7,669.35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13,350.18	0.50	0.00	17,163.87	0.66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16,418.06	0.50	0.00	24,833.22	0.66	0.0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05

주1)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17기(2024.10.29) 금 액		제16기(2023.10.29) 금 액		제15기(2022.10.29)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6,581,661		66,785,669		89,551,7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945,131		44,066,189		72,921,878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19,636,530		22,719,480		16,629,912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887,821,039		1,006,980,897		1,304,240,181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887,821,039		1,006,980,897		1,304,240,181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15,201,883		-5,429,637		6,270,423
1. 파생상품	-15,201,883		-5,429,637		6,270,423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14,742,913		2,317,389		932,73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4,720,220		2,242,211		889,734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46,013		72,846		54,247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23,320		2,332		-11,247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953,943,730		1,070,654,318		1,400,995,128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681,160		654,261		1,768,95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680,000		0		864,00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653,101		901,471	
4. 수수료미지급금	1,160		1,160		3,480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681,160		654,261		1,768,951
자 본						
1. 원 본	1,227,718,160		1,468,587,167		1,916,900,27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52,020,595		-16,329,571		-27,101,567	
3. 이월잉여금	-222,434,995		-382,257,539		-490,572,527	
(발행좌수 당기: 1,227,718,160 좌	이익잉여금	-222,434,995		-382,257,539		-490,572,527
전기: 1,468,587,167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1,916,900,271 좌)						
(기준가격 당기: 776.45 원						
전기: 728.59 원						
전전기: 729.94 원)						
자 본 총 계		953,262,570		1,070,000,057		1,399,226,17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53,943,730		1,070,654,318		1,400,995,128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17기(2023.10.30 ~ 2024.10.29)		제16기(2022.10.30 ~ 2023.10.29)		제15기(2021.10.30 ~ 2022.10.2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077,973		924,503		649,221
1. 이 자 수 익	1,077,973		924,503		649,221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45,264,544		938,462,738		1,038,136,33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22,719,76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269,410,375		323,857,845		526,593,236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250,360,000		387,688,000		235,425,423	
6. 외환거래/평가차익	125,494,169		226,916,893		253,397,916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28,176,827		924,366,958		770,021,676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306,276,738		217,148,90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93,161,883		397,969,637		341,298,000	
6. 외환거래/평가차손	35,014,944		220,120,583		211,574,77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513,630		674,290		683,590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513,630		674,290		683,590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17,652,060		14,345,993		268,080,29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		0		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30 ~ 2024.10.29	14.69	10.70	0.54	0.42	2.95	2.29	12.28	9.53
2022.10.30 ~ 2023.10.29	19.17	13.99	1.75	1.31	6.23	4.74	14.69	10.70
2021.10.30 ~ 2022.10.29	28.06	16.95	4.84	3.31	13.73	8.96	19.17	13.9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종류형펀드

Class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30 ~ 2024.10.29	11.34	6.62	0.03	0.02	1.78	1.10	9.60	5.90
2022.10.30 ~ 2023.10.29	14.57	8.61	0.08	0.05	3.30	2.04	11.34	6.62
2021.10.30 ~ 2022.10.29	23.09	11.43	0.13	0.07	8.65	4.46	14.57	8.61

Class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30 ~ 2024.10.29	4.07	2.32	0.31	0.18	1.09	0.65	3.29	1.97
2022.10.30 ~ 2023.10.29	4.93	2.85	1.91	1.13	2.77	1.66	4.07	2.32
2021.10.30 ~ 2022.10.29	4.48	2.17	5.60	3.05	5.16	2.82	4.93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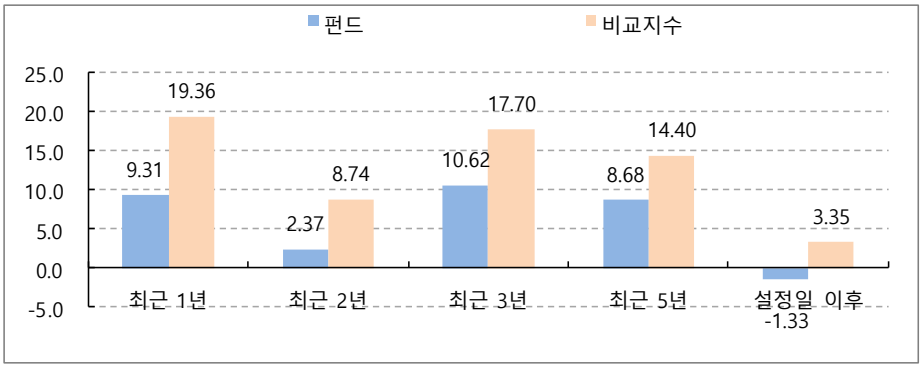
ClassC5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0.30 ~ 2024.10.29	2.28	1.62	0.24	0.19	0.34	0.25	2.19	1.63
2022.10.30 ~ 2023.10.29	3.33	2.40	0.02	0.01	1.07	0.81	2.28	1.62
2021.10.30 ~ 2022.10.29	5.28	3.20	0.02	0.01	1.97	1.27	3.33	2.4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신고서 또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12.01~ 2024.11.30	2022.12.01~ 2024.11.30	2021.12.01~ 2024.11.30	2019.12.01~ 2024.11.30	2007.10.30~ 2024.11.30
펀드	2007.10.30	9.31	2.37	10.62	8.68	-1.33
비교지수		19.36	8.74	17.70	14.40	3.35
수익률 변동성		14.59	17.62	21.32	28.88	28.13
ClassA	2007.10.30	8.08	1.21	9.37	7.44	-2.67
비교지수		19.36	8.74	17.70	14.40	3.35
ClassC5	2011.10.31	7.87	1.01	9.16	7.23	-2.03
비교지수		19.36	8.74	17.70	14.40	4.33
ClassC-e	2007.10.30	7.97	1.11	9.27	7.34	-2.82
비교지수		19.36	8.74	17.70	14.40	3.35

주 1) 비교지수: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TR) Index 94% + Call Index 6%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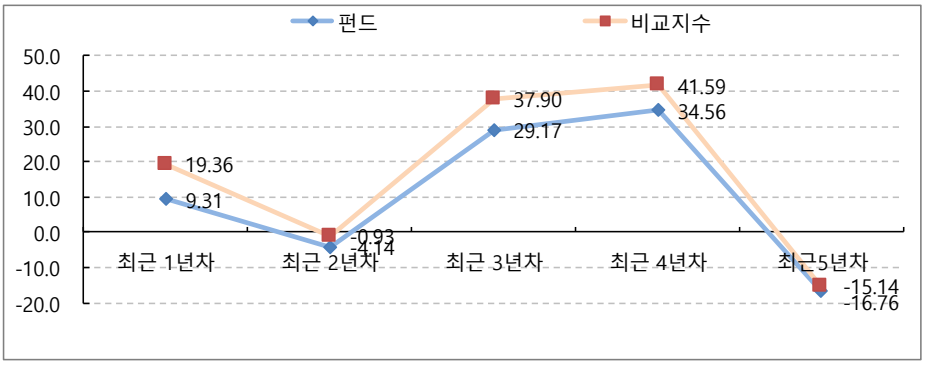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주 6)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3.12.01~ 2024.11.30	2022.12.01~ 2023.11.30	2021.12.01~ 2022.11.30	2020.12.01~ 2021.11.30	2019.12.01~ 2020.11.30
펀드	2007.10.30	9.31	-4.14	29.17	34.56	-16.76
비교지수		19.36	-0.93	37.90	41.59	-15.14
ClassA	2007.10.30	8.08	-5.22	27.73	33.06	-17.76
비교지수		19.36	-0.93	37.90	41.59	-15.14
ClassC5	2011.10.31	7.87	-5.41	27.48	32.80	-17.94
비교지수		19.36	-0.93	37.90	41.59	-15.14
ClassC-e	2007.10.30	7.97	-5.31	27.61	32.93	-17.85
비교지수		19.36	-0.93	37.90	41.59	-15.14

주 1) 비교지수: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TR) Index 94% + Call Index 6%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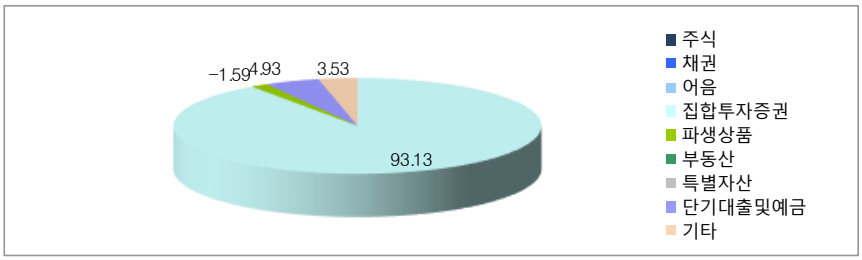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로,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2024.10.29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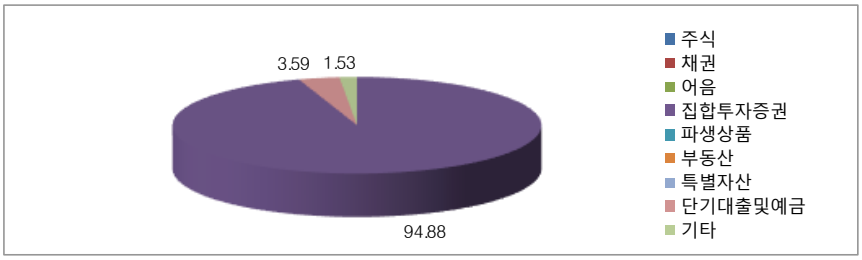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8.9	0.0	-0.2	0.0	0.0	0.0	0.5	0.3	9.5
	(0.00)	(0.00)	(0.00)	(93.13)	(0.00)	-(1.59)	(0.00)	(0.00)	(0.00)	(4.93)	(3.53)	(100.00)
KRW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3	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9.86)	(60.14)	(100.00)
USD	0.0	0.0	0.0	8.9	0.0	-0.2	0.0	0.0	0.0	0.2	0.0	9.0
	(0.00)	(0.00)	(0.00)	(98.94)	(0.00)	-(1.69)	(0.00)	(0.00)	(0.00)	(2.75)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우리프랭클린내츄럴리소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4.10.29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8.6	0.0	0.0	0.0	0.0	0.0	0.3	0.1	9.0
	(0.00)	(0.00)	(0.00)	(94.88)	(0.00)	(0.00)	(0.00)	(0.00)	(0.00)	(3.59)	(1.53)	(100.00)
KRW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76)	(82.24)	(100.00)
USD	0.0	0.0	0.0	8.6	0.0	0.0	0.0	0.0	0.0	0.3	0.0	8.9
	(0.00)	(0.00)	(0.00)	(96.68)	(0.00)	(0.00)	(0.00)	(0.00)	(0.00)	(3.32)	(0.00)	(100.00)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24.10.29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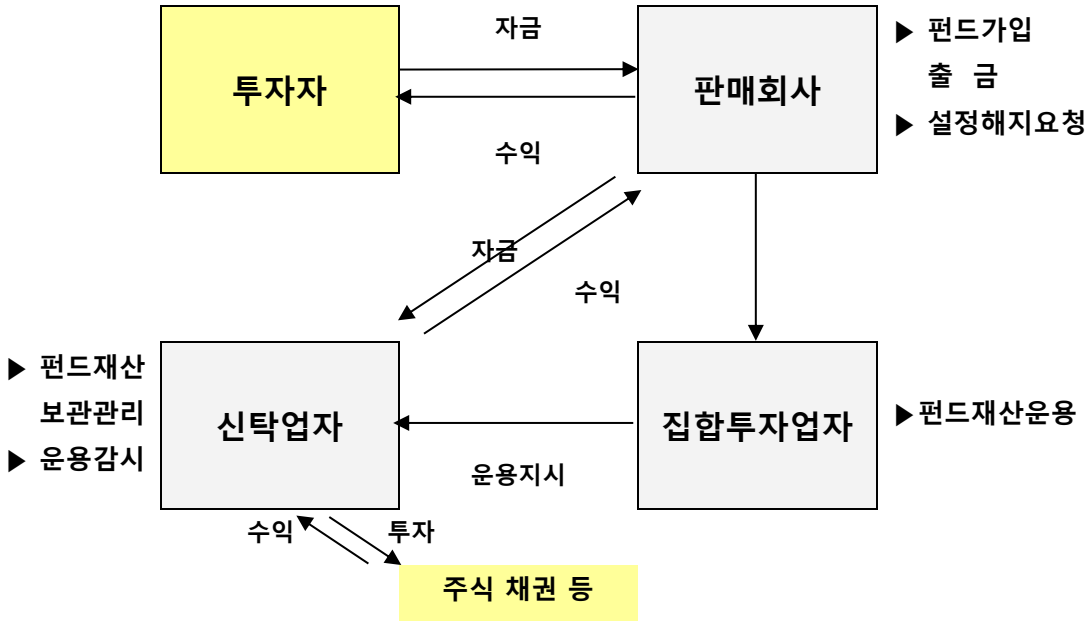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달러선물	5	100.00%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24.10.29 현재 / 단위 : 억원,%]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통화선도	4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 층, 44 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 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 1.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자본금	23,985,770,000 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3.12.31**	**22.12.31**	**항목**	**23.12.31**	**22.12.31**
유동 자산	620.2	398.9	영업수익	294.1	275.9
고정 자산	773.3	904.3	영업비용	247.8	213.7
자산 총계	**1,393.5**	**1,303.2**	**영업이익**	**46.3**	**62.2**
유동 부채	102.3	77.3	영업외수익	39.3	0.9
고정 부채		-	영업외비용	0.2	48.7
부채 총계	**102.3**	**77.3**	세전순이익	85.4	14.4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18.5	4.6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965.4	898.5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4.7	6.3			
자본총계	**1,291.2**	**1,225.9**	**당기순이익**	**66.9**	**9.8**

라. 운용자산규모

[2024.11.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246	112,082	2,866	8,936	4,275	20,275	19,856	1,601	156,520	334,65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25 (대표전화 02-2004-00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 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3 층, (우) 03921 (대표전화 02-3151-351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3215-1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회사명	NICE P&I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4 층 (대표전화 02-398-39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태화빌딩) 4층 (대표전화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④ 법 제247조제5항에 정해진 사항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 정해진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으로,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